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

신성훈 | 관세법인 드림 관세사



신성훈

관세법인 드림 관세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

원산지 관리업무를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내부 관리체계를 확보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FTA 원산지 관리업무를 반강제적이고 부수적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업무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부 역량강화를 통하여 하나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시점이다.

1. 들어가는 글

“FTA 강국, 대한민국”, “FTA 경제영토 확장으로 수출길 활짝”

주요 포털사이트에 “FTA” 세글자만 검색하여도 볼 수 있는 헤드라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한-중미 FTA가 발효되었고, 최근에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는 등 그간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FTA 교역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실적 대비 실제 FTA 활용실적은 2016년 63.8%, 2017년 70.0%에서 2018년에는 73.5%에 이르는 등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FTA 활용률은 향후에는 FTA 활용 없는 수출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활발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먼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실제로 기업규모에 따른 세부지표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매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국 중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60% 이상 집중되어 있고, 그 외 FTA의 활용률은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감소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FTA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무역환경에서 정작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은 정체되고 있는 이러한 괴리는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짚어보고,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① “FTA를 활용하면 좋은데, 왜 안하시죠?”

“해외바이어에게서 요청도 없고, 우리회사가 얻는 이익도 없는데 굳이 먼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나요?”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고객이 요청해서”일 것이다. FTA를 통한 관세혜택은 해외수입자가 받는 것이지, 관세환급처럼 직접적으로 수출기업에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FTA를 활용한 고객 유인, 협정관세 혜택의 제공을 통한 거래관계 향상 및 수출확대 등 FTA를 활용한 각종의 혜택은 현업에 치이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다가가기 힘든 부분인 것이다.

② “원산지 관리는 왜 안하고 계시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른 업무로 바쁜데 FTA까지 해야하니 여력이 없네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대부분 해외바이어의 관세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요청과, 국내 고객사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확인서의 요청에 건건이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업부서에서 구매업무까지 담당한다던지, 구매부서에서 생산이나 품질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1명의 실무자가 여러 부서의 업무를 겸업

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즉, 현업에 치이고 여건이 되지 않아 FTA 원산지 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 확인서와 같은 증명서류만 고객에게 제공할 뿐, 정작 중요한 원산지 지위의 정합성 측면이나 증명서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소명서류의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③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세혜택은 해외수입자가 받는 건데, 수출한 우리 회사도 처벌받나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수출검증 시 일부 간접 검증의 경우에는 미미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행정지도, 권고 정도의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근거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 시 고의성과 무관하게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실무자는 이러한 처벌규정 및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3.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

①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FTA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서 이벤트성 업무가 아닌, 하나의 상시적인 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 대한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세무·회계 부서에서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있다. FTA 또한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서만 납세의무자가 관세혜택을 제공받게 되므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하나의 업무에 해당한다. 즉,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 관리 업무는 기업에서 담당해야 할 하나의 일상적인 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② 원산지 “증명”이 아닌 원산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

FTA 관세혜택은 원산지증명서라고 하는 종이사료 한장으로 이루어진다. 즉, 수입 당시에는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고, 정확한 신고 행위만 있다면 충분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FTA 협정문 이하 관련 법령이 사후조사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원산지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은 대부분 수입통관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당장의 관세혜택을 받게 하는 “발급 행위”에 급급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원산지가 적정한지, 증명서류는 정확하게 발급된 것인지 등의 “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관의 원산지 검증 통지서를 받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을 나가보면 준비된 자료가 거의 없고,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운 좋게 한국산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각종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만에 하나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전문가의 손길도 처벌을 막을 방도가 없다.

이렇듯 현시점에서의 FTA 활용은 당장의 원산지증명서만 건건이 발급할게 아니라, 실제로 수출물품이 적정한 원산지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원산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③ 원산지 판정을 위한 모든 자료는 기업 내부에 있다.

FTA의 활용은 서류로서 원산지를 입증해 나가는 절차라 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간에 원산지 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 사후검증 등 실질적인 원산지를 소명해야 할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모두 서류로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FTA 원산지 판정과 소명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기업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즉, FTA 원산지 판정은 거창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닌, 기업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매출, 구매, 생산, 회계 등)를 하나로 취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④ 인력의 부족은 협업으로 극복하자.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방법은 FTA 전담부서와 관련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은 전담부서는 커녕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양성시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최소한 FTA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원산지관리담당자 1인은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기본적으로 매출, 구매, 생산 관련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아무리 현업에 바쁘다 하더라도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은 가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협업을 통한다면 부서별로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나 업무에 투입되는 공수는 현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만큼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정확한 HS CODE의 확정은 FTA 활용의 8할이다.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를 확정한다면 FTA 활용을 위한 80%의 업무처리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품목 분류 또한 법령에 근거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판단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난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관세당국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HS CODE를 회신받는 제도로써, 신청서와 물품설명서, 필요시 물품 견본의 제출을 통해 어렵지 않게 HS CODE를 확정지을 수 있다.

다만, 부품 및 원재료의 종류가 방대하게 많아서 일일이 물품별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능과 용도, 재질 및 성분이 동일한 물품을 하나의 카테고리화 하여 대표 물품에 대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품목분류의 법령 체계상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사용되고, 재질과 성분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충분한 분류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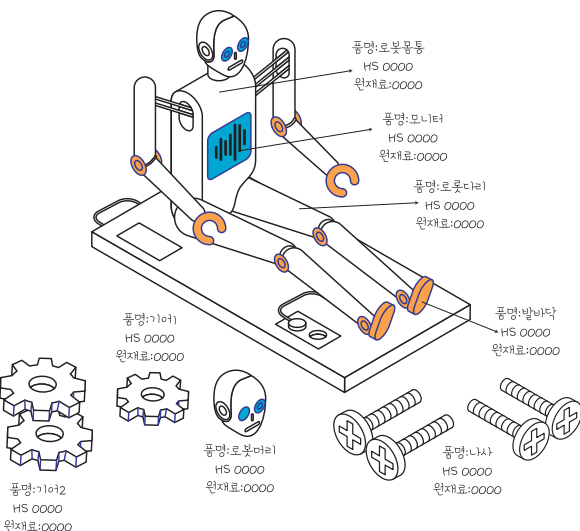
HS CODE의 확정은 첫째,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특정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세번 변경기준의 판정근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한-인도 CEPA와 특정 산업군(화학, 자동차 부품)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 근거의 확보는 FTA의 활용을 위한 80%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⑥ 원산지 이력관리의 핵심은 BOM이다.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s)는 원산지 판정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산지 검증 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제품의 설계 및 개발 당시에 작성된 개발 BOM 또는 표준 BOM을 원산지 판정에 적용하고 있으나, FTA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BOM은 실제로 생산 당시에 어떤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어떤 부품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될 수 있는 실적 BOM이 필요하다. 개발 BOM이나 표준 BOM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설계, 디자인, 개발 계획 단계에서 파생된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실제 원재료의 수급, 공급업체, 소요량 등 제품 생산 단계에서 파생된 정보와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의 소요량이 아닌 성분 표에 근거한 함량을 원산지 판정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히 부가가치 기준의 판정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판정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 일부 원재료를 대체 가능한 다른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여하에 따라 완제품의 원산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원산지 검증 시에는 BOM과 작성의 근거가 되는 소명서류(원재료 매입데이터, 수불내역, 거래증빙서류 등)들의 상호간 연계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BOM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생산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적 BOM과 표준 BOM의 차이를 월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상기 예시와 같이 생산팀에서 투입 원재료와 소요량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월별로 체크하여 원산지 판정 시 반영하고 이력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⑦ 단계별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

FTA 원산지 관리업무는 ①원산지 판정 단계, ②원산지증명서 발급 단계, ③원산지 이력관리 단계 등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로, 원산지 판정 단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원산지 판정을 위한 정보를 취합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매출정보(판매가격 및 운송료 등 부대비용 정보 등), 생산정보(생산일자, 실적 BOM에 따른 원재료 투입내역 및 소요량 정보 등), 구매정보(원재료 매입일자, 매입단가, 공급업체, 수불정보 등)가 필요하며, 부가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와 HS CODE의 확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단계는

고객이 요청하는 증명서류 상에 형식적 요건 등의 하자가 없도록 발급하는 단계이다. 셋째로, 원산지 이력관리 단계는 고객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실질적인 판정내역과 원산지의 정합성에 대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단계이다.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담당자가 상기의 원산지 관리 단계에 따른 정확한 인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관리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가령 시스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판정내역의 검토 등 사람의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든 휴먼 에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과 같이 우리 회사의 원산지 관리 각 단계에서 확신이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 미흡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물론, FTA 활용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FTA 업무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거나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하에 선택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들어 세번변경기준만이 적용되는 협정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조력을 구한다든지,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갖춰진 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산지 관리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등 선택적으로 부분적인 조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4. 마치는 글

기업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업무든 하루 아침에 똑딱 체계가 잡혀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새롭고 생소한 업무는 언제나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일 것이다. 또한 기업의 모든 업무가 매출신장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원산지 관리업무 또한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내부 관리체계를 확보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FTA 활용의 효과가 기업의 영업적인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여, FTA 원산지 관리업무를 반강제적이고 부수적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업무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부 역량강화를 통하여 하나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시점이다.